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4
----------	------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 : 2021년 10월 20일
- 라. 상정일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상한)

###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1.6.23.)에 따른 정보공개 교육의 실시, 사전공개 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교육의 의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 9호).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함(안 제7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2021. 7. 22. ~ 8. 11.)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12.22.)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시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등을 위해 골자로 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교육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4조제6항), 사전공개 대상 중 계약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안 제5조제1항제9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안 제7조제2항) 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켜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정보공개 교육 실시의 내실화와 행정정보 사전적 공개에 따른 관리감독 문제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편중에 따른 공정성 침해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정보공개 교육 실시(안 제4조제6항)

- 안 제4조제6항은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 ⑤ (생략)  <div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div>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임직원들에게 정보공개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곤란하여 2021년 정보공개 시청각 교육교재 제작 후 서울시·자치구·지방공사 등에 배포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 관리와 과정 운영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3년간 정보공개 교육실적(2019~2021.9.)]

(2021.9.30. 기준)

구분	교육대상	'19년	'20년	'21년
집합	실무자	6회	-	-
	신규임용	9회	1회	-
서면	실무자	-	3회	3회
온라인	신규임용	-	-	7회
	실무자	-	-	상시

- 또한,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개여부의 자의적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과 위법한 공개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규정 교육 등에도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보안교육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개인정보 유노출 현황 및 조치결과]

일 자	유출경로 (부서명)	인지경위	유출내용	유출항목	규모 (명)	원인	재발방지대책
'19.2.17.	문화포털 (문화정책과)	언론보도	서비스가 중단된 도메인으로 구글에서 검색됨	주민등록번호 기본정보	136	담당자 부주의	서버 스캔 점검 필터링시스템 연동
'19.4.8.	복지포털 (복지정책과)	시민제보	해당 게시물이 구글에서 검색됨	민감정보 (장애유형, 기초생활수급)	2	담당자 부주의	개인정보 관리, 홈페이지 안전조치
'19.4.29.	건설알림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언론보도	시공사 업체직원이 개인정보파일을 공개로 수정변경함	주민등록번호	1	업체직원 부주의	홈페이지 내 모든 첨부파일 전수조사 및 비공개 처리
'20.1.29.	열린데이터광장 (빅데이터담당관)	한국인터넷 진흥원	첨부파일의 숙박업 현황에 개인정보 포함	주민등록번호	11	담당자 부주의	개인정보 관리 홈페이지 안전조치
'21.2.10.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한국인터넷 진흥원	서류심사 합격자공고의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1,150	담당자 부주의	개인정보 관리 홈페이지 안전조치, 필터링 전수조사

[개인정보 오·남용 등에 따른 징계현황 및 내용(실·국·본부·사업소별, 산하기관별)]

구 분	징 계 현 황(명)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훈계 등
계	7	-	-	-	1	1	2	3
2019년	5	-	-	-	1	-	1	3
2020년	2	-	-	-	-	1	1	-
2021년		-	-	-	-	-	-	-

※ 훈계, 경고, 주의는 공무원 징계의 포함되지 않음

2) 정보의 사전적 공개 구체화(안 제5조 제1항 및 제9호)

- 안 제5조의 제명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 대상 중 계약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호).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8. (생략)</p> <p>9. <u>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u></p> <p>10. ~ 16.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u></p> <p>10. ~ 1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들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조 제목의 ‘공표’를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여도 법률적 문제는 없어 보이며,

- 정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릴 수 있는바,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내용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만 공개하는 사항을 좀더 구체화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과 예측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다만, 기계적으로 법령의 개정사항만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공개의 주기·시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 체결의 현황, 감리·감독·검사의 현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좀 더 명확히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와 정보공개에 대한 사후 관리와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보완적 요소도 있다고 하겠음.

[계약 관련 정보 사전공개 현황]

(2021.9.30. 기준)

분류	공표항목	공표대상	공표형태	URL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발주계획 현황	홈페이지 링크	<a href="http://contract.seoul.go.kr/views/orderPlan.do">http://contract.seoul.go.kr/views/orderPlan.do</a>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홈페이지 링크	<a href="http://contract.seoul.go.kr/views/pubBidInfo.do">http://contract.seoul.go.kr/views/pubBidInfo.do</a>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개찰결과	홈페이지 링크	<a href="http://contract.seoul.go.kr/views/pubOpenResult.do">http://contract.seoul.go.kr/views/pubOpenResult.do</a>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공사계약 현황	홈페이지 링크	<a href="http://contract.seoul.go.kr/views/contractInfo.do">http://contract.seoul.go.kr/views/contractInfo.do</a>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용역계약 현황	홈페이지 링크	<a href="http://contract.seoul.go.kr/views/contractInfo.do">http://contract.seoul.go.kr/views/contractInfo.do</a>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물품구매 현황	홈페이지 링크	<a href="http://contract.seoul.go.kr/views/contractInfo.do">http://contract.seoul.go.kr/views/contractInfo.do</a>
공통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현황	홈페이지	<a href="http://contract.seoul.go.kr">http://contract.seoul.go.kr</a>

업무	주요 계약현황		링크	/views/contractInfo.do
공통 업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주요 계약현황	대금지급 현황	홈페이지 링크	http://contract.seoul.go.kr /views/paymentInfo.do

※ 공개사이트 :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public/category)

### 3) 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변경(안 제7조 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은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 <u>심의회</u>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u>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u> 로 하고 <u>이중 과반수</u> 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서울특별시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 <u>법</u> ----- ----- ----- ----- ----- ② ---- <u>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이중 3분의 2</u> -----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와 외부 인사의 균형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바, 내부와 외부위원의 구성에 대한 균형 있는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정보공개심의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심의회가 외부 인사들만에 의하여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5명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됨에 따라 심의회 위원의 대다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바, 외부위원의 각계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구성 현황 : 복수심의회(당연직 1, 외부위원 10(외부위원 비율 91%))

- 제1심의회(6) : 행정국장, 외부 전문가(5)
- 제2심의회(6) : 행정국장, 외부 전문가(5)

(2021.9.30. 기준)

연번	위원 구분	소속 심의회	성명	직위	임기
1	위촉직(외부위원)	제1심의회	정00 (위원장)	교수	'20.10.16.~'22.10.15
2	위촉직(외부위원)	제1심의회	전00	변호사	'20.4.30.~'22.4.29.
3	위촉직(외부위원)	제1심의회	송00	변호사	'20.4.30.~'22.4.29.
4	위촉직(외부위원)	제1심의회	이00	기록전문가협회	'20.4.30.~'21.9.30.
5	위촉직(외부위원)	제1심의회	노00	교수	'21.4.3.~'23.4.2.
6	위촉직(외부위원)	제2심의회	심00 (위원장)	언론인권센터	'20.4.30.~'22.4.29
7	위촉직(외부위원)	제2심의회	이00	변호사	'20.4.30.~'22.4.29
8	위촉직(외부위원)	제2심의회	조00	교수	'20.4.30.~'22.4.29.
9	위촉직(외부위원)	제2심의회	이00	교수	'20.10.16.~'22.10.15
10	위촉직(외부위원)	제2심의회	임00	변호사	'21.4.3.~'23.4.2.
11	당연직	제1,2심의회	김상한	행정국장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2019~2021.9.)(2021.9.30. 기준)]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9월
개최횟수	60회	21회	21회	18회
심의안건	197건	69건	71건	57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4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1.6.23.)에 따른 정보공개 교육의 실시, 사전공개 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교육의 의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6항).
-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9호).
- 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안 제7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7. 22.~8. 11.)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제7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이 중 3분의 2”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 ⑤ (생략)  <u>&lt; 신 설 &gt;</u></p>	<p>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p>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8. (생략)</p> <p>9. <u>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u></p> <p>10. ~ 16. (생략)</p>	<p>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            -----            -----            -----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 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u></p> <p>10. ~ 1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 ③ (생략)</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p> <p>① 서울특별시장은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심의회는 <u>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u></p> <p>③ ~ ⑧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p> <p>① ----- 법 -----</p> <p>-----</p> <p>-----</p> <p>-----</p> <p>-----</p> <p>② ----- <u>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u> -- <u>이 중 3분의 2</u>-----</p> <p>-----</p> <p>-----</p> <p>-----</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세출예산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비율 조정, 정보공개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혜지(02-2133-5679)